

# 중앙도서관위원회규정

제 1 조 (목 적)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위원회(이하 “본 위원회”라 한다)는 중앙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위원회 구성)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위원 약간명, 전문위원과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.

제 3 조 (위원장) 본 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도서관장이 된다.

제 4 조 (위원위촉) 본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각 대학장으로부터 약간명을 추천 받아 총장에게 제청하여 총장이 위촉한다.

제 5 조 (전문위원, 간사임명) 전문위원 및 간사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 한다.

제 6 조 (심의사항)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본 도서관 규정 및 그 세칙의 제정 및 개폐
2. 예산편성 및 도서구입에 관한 사항
3. 위원장의 제의사항
4. 위원의 제의사항

제 7 조 (건의) 본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· 결의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.

제 8 조 (전문위원의 역할) 본 위원회 전문위원은 도서관업무의 전문분야에 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.

제 9 조 (회기) 본 위원회는 연1회 이상의 정기위원회를 갖는다.

제 10 조 (임시위원회)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임시위원회를 소집한다.

제 11 조 (간사의 역할) 간사는 본 위원회 실무를 담당하며 기록을 보관한다.

## 부 칙

본 규정은 197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본 규정은 2000년 1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